

공정거래규정집

(주)다이소아성산업

목 차

1. 계약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운영에 대한 규정	2
납품단가 결정·변경 규정	12
판매촉진행사 진행 규정	16
반품에 관한 규정.....	22

2.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경영정보 요구 목적·범위·절차 관련 규정	29
협력업체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31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규정.....	38

[서식]

■ 협력업체의 선정·운영에 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윤리경영 서약서.....	7
■ 협력업체의 선정·운영에 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밀유지약정서.....	8
■ 판매촉진행사 진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판매촉진물 제작 비용 분담 합의서.....	20
■ 판매촉진행사 진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판매촉진행사 진행 요청서.....	21
■ 반품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시즌상품 반품에 관한 사전약정서.....	25
■ 반품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반품 사유서.....	26
■ 반품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반품 요청서(당사용).....	27
■ 반품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반품 요청서(협력업체용).....	28
■ 협력업체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종업원 파견 요청서.....	36

협력업체 선정·운영에 대한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의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협력업체 선정절차)

- ① 당사와의 상품공급, 물품 납품 또는 기타 거래(이하 "거래"라 한다)를 희망하는 업체(이하 "납품희망업체"라 한다)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daiso.co.kr>)의 "납품상담"을 통해 당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납품제안 상담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납품희망업체가 제출한 납품제안 상담의뢰서를 바탕으로 당사 임원이 포함된 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상담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진행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담당 MD를 지정하여 해당 납품희망업체에게 상담 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 ④ 담당 MD는 납품희망업체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고, 제4조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협력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협력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사의 ERP시스템에 해당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에게 당사의 윤리경영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고, 협력회사와 기밀유지약정(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미선정업체에 대한 결과 통지는 당사의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업체 선정기준)

- ① 협력업체 선정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상품경쟁력
 - 가. 상품의 가격
 - 나. 상품의 품질
 - 다. 상품의 불룸감
 - 라. 상품의 시장경쟁력
 - 2. 업체경쟁력
 - 가. 연간 매출액을 비롯한 업체의 재무건전성
 - 나. 업체의 주요 상품군
 - 다. 납품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기술, 품질관리, 생산성, 설비 및 배송능력 보유 여부
 - 라. 주요 거래처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협력업체 선정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현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2. 과거 거래실적 유무
 3.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 유무
- ③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5조(상품거래 개시)

- ① 협력업체와 상품거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와의 개별 상품거래는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력업체에 교부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개시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가 해당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상품 예약수량을 당사의 ERP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상품MD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발주서 교부 전, 구두(口頭)로 상품을 주문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규상품 제안)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 납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상품경쟁력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제7조(거래중지)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와의 특정 상품에 대한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1.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상품 품질 불량 이 반복되는 경우
 2. 원부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당사의 균일가 정책에 더 이상 부합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상품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상품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하되어 추가 발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생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납기내 수량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도 관계법령 및 상품공급계약서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한 협력업체가 이미 납품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업체 등록취소)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상품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납품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협력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당사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규에 따른 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경우
 5. 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당사의 정책에 반하거나 당사의 신뢰나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협력회사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등록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 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납품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 강요 등 금지)

- ① 당사는 부당하게 협력업체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0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윤리경영 서약서

(주)다이소아성산업 대표이사 귀하

_____는 (주)다이소아성산업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사항을 절대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01 당사는 본 서약의 준수가 상호 신뢰와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02 당사는 (주)다이소아성산업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주)다이소아성산업 임직원을 상대로 정당하지 않은 금품,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 금전적·비금전적 편익을 제공하여 (주)다이소아성산업 윤리규범에 반하는 어떠한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03 당사는 (주)다이소아성산업과의 거래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의 제안을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한웰그룹 윤리사무국 또는 (주)다이소아성산업 동반성장팀에 알리겠으며 (주)다이소아성산업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04 당사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주)다이소아성산업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05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거래중지, 계약물량 감축, 계약기간 단축, 거래조건 변경,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한 회사의 제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인)

기밀유지약정서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기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기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약정 당사자의 관련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정에서 기밀정보라 함은 협력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 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 수령자라 한다.

② 기밀정보는 구두, 서면, 도표, Tape, Diskette, 복사물, List, Model, Sketch, 설계도 기타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그 제공방법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 3 조 (기밀의 표시)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기밀임을 알리는 문구(“기밀”, “대외비”, “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기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 4 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기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 (정보취급자)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기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약정상의 기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약정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기밀유지의무가 없다.

1. 기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기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료의 반환)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기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9 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약정상 제공되는 기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약정상 제공된 기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약정의 당사자가 본 약정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약정의 당사자는 본 약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약정의 분리가능성) 본 약정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약정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수정) 본 약정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3 조 (손해배상 등) 본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기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14 조 (기밀유지 등 의무기간) 본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약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기밀정보에 대한 정보 수령자의 기밀유지 의무 및 무단 사용 금지 기간은 기밀정보 제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약정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의 경우에도 동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 15 조 (특약사항)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약정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76 대표이사 (인)	△△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인)
---	--

납품단가 결정·변경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과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납품단가 결정 및 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품단가 결정 및 변경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당사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납품단가의 결정"이란 협력업체가 제조한 상품을 당사에 납품 또는 공급할 때 매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상품의 개별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납품단가의 변경"이란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품단가의 결정)

- ① 상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입기한·원재료의 가격·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당사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이하

“부당한 납품단가의 결정”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당한 납품단가의 결정 행위)

① 당사와 협력업체 간 납품단가의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납품단가의 결정행위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상품에 대해 종전 계약의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나. 협력업체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납품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라. 협력업체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다음의 행위
 -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협력업체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협력업체의 종전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협력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다음의 행위
 - 상품의 종류, 거래수량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업체와 거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납품단가를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4. 협력업체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매출 증대계획 문건 등을 협력업체에게 보여주면서 종전 계약

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언질을 주어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나. 다른 협력업체의 계약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5. 당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미리 정한 원가절감 목표액을 협력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신규 상품에 대해 종전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 납품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대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 납품단가의 결정 과정 없이 상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협력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보다 낮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6.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당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7. 협력업체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 받아 협력업체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8.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제5조(납품단가의 변경)

- ① 협력업체는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상품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납품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후에 당사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협력업체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당사와의 납품단가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 ③ 당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당사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다음 각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 2. 협력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 3.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6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판매촉진행사 진행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과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부담 및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 11조, 제12조, 제1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촉진행사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당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판매촉진행사"란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정기·부정기·계절·특수시즌 행사(가격할인 행사, 사은품 증정 행사, POP제작 등)
 - 나. 대대적 광고·홍보행사(TV, 라디오, 전단지, 리플릿, 팸플릿 등 제작배포 행사 등)
 - 다. 기타의 소비자 이익 제공 행사(1+1행사, 추가 액세서리 제공 행사,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행사, 무이자할부 행사, 배송비 지원 행사 등)
3. "판매촉진비용"이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판매촉진행사 진행)

- ① 당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 따라 협력업체와 판매촉진행사 약

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액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력업체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4조(협력업체와의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협력업체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약정서를 체결과 동시에 서면을 협력업체에 1부 교부하여야 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필요한 경우 예상수량도 함께 기재)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이하 "예상이익"이라 한다)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비율 또는 액수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전에 수령하여야 한다.

- ③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기획·실사에 관한 서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판매촉진행사의 참여)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납품가격의 할인)

당사는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통상의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납품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납품수량의 조정)

- ① 당사는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통상의 납품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협력업체의 납품 실태
 2. 원재료의 수급상황 변화
 3.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4.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5. 그 밖에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제8조(비용의 분담)

- ① 판매촉진비용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당사와 협력업체의 직접적인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력업체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협력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당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협력업체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당사는 판매촉진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촉진행사 진행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당사 일방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후, 판매촉진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킨 경우
 2.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에 대하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협력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3. 협력업체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4. 판매촉진행사 실시 중 사전 서면 약정되지 않은 행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게 이 비용을 전가

하는 경우

5.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해 얻은 이익에 비해 당사가 현저하게 적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9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판매촉진물 제작 비용 분담 합의서

_____는 (주)다이소아성산업과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판매촉진물 제작 비용 분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간 합의한다.

1. 판매촉진물 제작 사항

주제	입고시기	판촉대상 상품 (없으면 공란)	소요예산비용	예산 이익비율 (당사: 협력업체)	비고

2. 판매촉진물 제작 비용 분담 비율 (비율은 숫자로 기입)

협력업체명(_____): (주)다이소아성산업 = _____ : _____

20 년 월 일

<p>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76</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이사 (인)</p>	<p>△△ 주식회사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이사 (인)</p>
---	--

판매촉진행사 진행 요청서

○ 요청자: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기재)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

당사는 (주)다이소아성산업과 상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당사 공급 상품의 판매촉진물을 제작하는 것이 당사의 입장에서 상품의 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급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주제	입고시기	판촉대상 상품 (없으면 공란)	소요예산비용	비용분담 비율 (당사: 다이소)	비 고
상품POP					
전용매대설치					

- 이상 -

20 년 월 일

위 요청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주)다이소아성산업 귀중

반품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과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와의 반품 처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반품"이란 당사가 납품 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협력업체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협력업체"란 당사가 판매할 상품을 당사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하자"라 함은 패키지 오류, 상품의 기능상 문제, 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 안전 기준의 위반, 고객 위해, 상품의 안전 관련 정부기관의 조치 등을 포함한다.

제3조(반품 조건)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 받은 상품에 협력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당사가 부담하고 협력업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4. 할로윈,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업체에
게 준 경우

5. 신·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협력업체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
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제4조(사전약정서 작성)

-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즌성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발주 전에 다음의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시즌상품의 반품에 관한 사전약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즌상품 판매기간
 2. 반품 허용 품목 및 예상 발주수량
 3. 반품조건
 4. 반품예정기간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발주수량은 해당 상품의 작년도 매출액 및 당사의 매출성장도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에는 담당 MD 및 협력업체(협력업체 소속 직원 포함)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반품 절차)

-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품을 하려는 경우 담당 MD는 반품진행에 대한 사항을 협력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품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협력업체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제3조제3호에 따라 반품하려는 경우 담당 MD는 반품실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력업체의 동의를
얻은 후 반품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즌성 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시즌상품의 반품에 관한 사전
약정서에 기재된 반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5호에 따라 반품을 하려는 협력업체는 반품요청서(협력업체용)(별지 제3호의2서식)를 작성하
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반품 비용)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품 비용을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용을 당사가 부담한다.
-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용을 당사와 협력업체가 상호협약하여 결정한다.

제7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 반품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반품 요청서(당사용)

(주)다이소아성산업은 협력업체 _____(으)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 내부 정책 등에 따라 (주)다이소아성산업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이 반품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반품 대상 상품		반품예상수량	반품의 구체적 사유	반품예정기간	비고
품번	품명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귀중

경영정보 요구 목적·범위·절차 관련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과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간 상품 공급 거래 계약 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당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의 경영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의 정보를 말한다.
 - 가.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 나. 협력업체나 협력업체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가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다음의 경영정보
 - (1) 협력업체가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 (2)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 (3)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 (4)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제3조(경영정보 요구 범위)

- ① 당사는 부당하게 협력업체에게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영정보 요구 절차)

- ①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당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협력업체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이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당사의 매장에 근무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당사가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특약매입거래"란 당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3.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당사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파견 허용 사유)

- ①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당사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업체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가 파견된 종업원 인건비를 비롯한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와 그 밖에 당사 매장에서 파견 종업원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협력업체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당사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협력업체의 제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형태로 운영 시 해당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견 허용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파견비용 부담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파견 인력에 지급하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2. 파견비용 부담 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약정서에 기재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진열대 등의 설치비용, 샘플 상품 비용 등 당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협력업체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협조요청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사후에 협력업체로부터 파견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4. 협력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협력업체가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5.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거나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단순 상품 판매 업무의 수행을 위해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
6.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 수준의 단순 판촉업무에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하여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행위
7.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단순 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하여 파견 받는 행위
8. 당사 차원의 판촉행사 기간에 행사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 행사요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파견 받는 경우

제4조(파견 조건의 약정과 서면의 교부 등)

- ①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동 서면에 당사와 협력업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업원의 수
 2.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1. 종업원을 파견 받은 이후에 서면 약정하는 경우
 - 가. 단기 판촉행사라는 이유로 서면 약정 없이 협력업체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추가로 요구하고, 사후에 협력업체로부터 파견요청서와 서면약정서(기명날인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
 - 나. 종업원을 최초로 파견 받은 시기와 약정한 시기가 상이하고, 약정 이전 시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약정 일자를 최초 파견 시기 이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 다. 파견 종업원의 인원수 등 파견조건 약정을 사후로 유보하는 경우
 - 라.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마련은 종업원 파견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파견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2.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가.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파견요청 문서 등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 받는 경우
 - 나.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다. 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3.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약정하는 경우
 - 가. 파견조건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상시근무 판매사원을 파견 받으면서 파견 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경우
 - 나. 상품매출 변동, 단기 판촉행사 등 필요한 종업원 수가 최대 10명 등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도 "5명~30명" 또는 "30명 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 다.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상반기 중" 또는 "3분기 중"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협력업체가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라. 협력업체는 구체적 파견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하고, 구체적인 파견조건은 유통업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4. 약정한 서면이 불완전한 경우
 - 가.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마련되었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나. 전자서면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때, 협력업체의 서명을 당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는 경우
 5. 협력업체에게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④ 당사와 협력업체가 종업원 파견조건을 약정한 서면은 체결 즉시 협력업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서면은 약정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 종업원 업무 범위)

- ① 파견 종업원은 해당 인원을 고용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견 종업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파견된 종업원을 계산대에서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
 2. 파견된 종업원에게 통로·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3. 파견된 종업원을 배송 차량으로부터의 상품 하역, 창고반입 업무, 쇼핑 카트 회수·정리,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지원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4. 파견된 종업원에게 협력업체 자사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재고파악 및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5. 당사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정기재고조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견 종업원으로 하여금 협력업체 자사상품의 재고를 파악토록 하는 행위

제6조(협력업체의 종업원 파견 요청)

협력업체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상품의 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협력업체의 종업원을 당사에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

종업원 파견 요청서

○ 요청자: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기재)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

당사는 귀사와 사이에 상품 특약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당사의 종업원을 귀사의 매장에 파견하여 파견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사의 상품 판매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입장에서 상품의 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당사의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 이상 -

20 년 월 일

위 요청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주)다이소아성산업 귀중

(뒤쪽)

예상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

(단위 : 천원)

파견인원 범위	파견 기간	파견비용 (1개월/1인 기준)						예상이익 (1개월/1인 기준)	
		산출근거	인건비	식비	교통비	기타	합계	산출 근거	예상 이익
	~								
	~								
	~								
	~								
	~								
	~								
	~								
	~								
	~								
	~								
	~								
	~								
	~								
	~								
	~								
	~								
	~								
	~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당사"라 한다)과 당사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간의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분담 및 판매촉진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약매입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당사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특약매입거래"란 당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3. "판매촉진행사"란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거래 과정)

- ① 당사는 협력업체와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협력업체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며, 이 서면에는 당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약매입거래가 체결된 후에 당사와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은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품 발주(당사) → 상품 입고 → 검품·검수 → 외상매입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 판매상품분에 대해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월별 마감) → 미판매분 반품처리

④ 당사가 협력업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특약매입거래 체결 당시 당사와 협력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사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역할)

당사와 협력업체는 특약매입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당사의 역할

1. 협력업체를 통해 당사 이름으로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월별로 판매수익을 집계하여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다.
2. 집객을 위한 광고·홍보·판촉행사 기획 등 활동을 실시한다.

② 협력업체의 역할

1. 당사 매장 내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의 매대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상품에 대한 판매활동과 매장 내에서 상품에 대한 진열·보관업무를 수행한다.
2. 이 과정에서 해당 협력업체의 상품재고를 관리하고 미판매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회수(반품)한다.

제5조(비용 부담)

당사와 협력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 입고 및 관리 단계

1. 상품에 대한 재산보장보험 비용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과 도난 등에 의해 보유 상품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재산보장보험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2. 상품보관 비용

상품에 대한 검품·검수 후 창고 등 시설에 상품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3. 상품 멸실·훼손 비용

가. 상품에 대한 검품·검수 후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나.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상품의 멸실·훼손 비용을 부담한다,

② 매장 운영 및 관리 단계

1. 매장 인테리어 비용

매장 집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2. 판촉사원 비용 및 규모

가.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교통비 등의 실비 및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나. 매장에 파견할 판촉사원 규모는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 매장관리 비용

협력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등과 같은 각종 관리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③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단계

1. 매장 차원에서의 광고 비용

가. 당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나. 매장 차원에서 집객을 위한 전단지 등의 광고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다. 당사가 전체 매장 단위로 통일적으로 연출하는 POP, 포스터 등의 홍보·광고 장식·제작물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2. 매장 차원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당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 매장 또는 개별 매장 차원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3. 당사와 협력업체 간 공동 판매촉진행사 비용

당사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적인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력업체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협력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당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협력업체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6조(판촉사원 업무 범위)

- ① 협력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당사 매장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한다.
- ② 판촉사원은 해당 인원을 고용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및 현금출납 보조업무, 주차지원 업무 등 당사 고유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판촉사원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촉진행사 참여)

- ① 당사는 판매촉진행사에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협력업체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판매촉진행사 참여의 강제성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협력업체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사
 2. 판매촉진행사 불참 시 제재수단의 존부 또는 불이익 부여 여부
 3. 판매촉진행사의 성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4. 협력업체의 거래의존도
 5. 당사와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의 지속성

6. 거래상품의 특성

제8조(제재)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개정내용을 3개월 이상 협력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발령 후 즉시 시행한다.